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건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며, 소방특수목적건인 119구조건의 활동범위 확장과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119구조건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나. 119구조건대의 출동구역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119구조건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119구조건대(이하 “구조건대”라 한다.)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을 따른다.

제4조의3(119구조건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건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건대: 전국
2.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건대: 관할 시·도

② 구조건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7조제2항제4호 중 “인명구조견”을 각각 “119구조견”으로 하
고, 제6조제7항제6호 중 “인명구조견 및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 및
119구조견”으로 한다.

별표 5 전문경력관 나군(인명구조견담당) 8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
(119구조견담당) 8”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인명구조견담당)
8”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인명구조건의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건을 운영할 수 있다.</u> <u>② 소방청장은 우수한 인명구조건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건 양성·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건의 운영 및 육성·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삭 제></u> <u>제4조의2(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을 따른다.</u> <u>제4조의3(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견대:</u> <u>전국</u> <u>2.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u> <u>구조견대: 관할 시·도</u> <u>② 구조견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119구조과	
연 락 처	(044) 205 - 7611